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1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변론 종결 2019. 7. 10

판결 선고 2019.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대 681㎡에 관하여 2000. 8. 29. 취득시효 완성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5. 12. 26. 경북 의성군 C 대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 하여 1963.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父)인 망 D은 1980. 8.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원고는 망 D이 사망한 2002. 7.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19. 6. 15.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D은 1980. 8.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년 이상 소유의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망 D은 이 사건 토지를 악의로 무단점유하였으므로,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 D은 1980. 8.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980. 8. 30.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D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악의로 무단점유하였으므로,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객관적 사정,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내거나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망 D이 피고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거나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악의로 무단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결국 1980. 8. 30.경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D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피고는 망 D 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슬기